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개 선 요 구

제 목 소방장비 보유기준 대비 적정 확보 및 공기호흡기용기 등 관리소홀

기 관 명 울산광역시

내 용

「소방장비 관리 규칙」 제14조(소방장비의 안전관리), 제16조(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등), 제20조(소방장비의 내용연수)규정에 따라 각종 소방장비는 보유기준에 맞게 적정보유 하여야하며,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·유지 하고, 내용연수 경과장비에 대해서는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.

1. 소방장비 보유기준 대비 적정 확보 및 관리미흡

울산광역시 소방본부, ○○·○○·○○·○○소방서에서 보유중인 소방장비는 [표1]과 같이 구조장비 총 239종 1,860점(필수기준), 구급장비 876점(전문 60, 기본 816), 공기호흡기용 복합용기 2,056개, 잠수용 용기 162개, 의료용 산소용기 140개, 휴대용무전기 914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

[표1] 울산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구조장비 등 보유현황

구분	구조장비		구급장비		공기호흡기용기	잠수용기	의료용 산소용기	휴대용 무전기
	기준	보유(충족)	기준	보유(충족)	보유	보유	보유	보유
총계	1,911점	1,860점	959점	876점	2,056개	162개	140개	914대
본부	0	0	0		0	0	0	37
○○	425	423	291	257	625	35	35	269
○○	407	397	198	180	401	50	31	171
○○	398	388	272	253	523	46	32	222
○○	380	378	167	161	439	29	38	171
○○○	232	224	0		63	0	0	31
○○○	69	50	31	25	5	2	4	13

※ 울산광역시(○○본부) 제출자료 재구성

그런데 울산○○·○○·○○·○○·○○○·○○○에서는 「소방장비 관리 규칙」 기준에 따라 보유하여야 할 필수 보유(충족) 구조장비가 총 1,911점이여야 함에도 1,860점(97.3%)에 대해서만 보유(충족)하고 있었으며, 보유하고 있는 전체 구조장비(필수 + 선택장비) 총 4,234점 중 224점(5.3%)이 내용연수를 경과하였고, 기본구급장비는 보유기준 959점 중 876점(보유율 91%)을 보유(충족)하였으나, 이중 380점(노후율 46%)이 노후 된 장비로 확인되었다.

또한 재난현장에서 현장정보의 전달·지시·전파 등에 필요한 중요 통신수단인 휴대용 무전기는 울산소방 총인원 945명 중 914대(보급율 96.7%)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, ○○소방서는 155명이 171대(보급율 111%)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[표2]과 같이 확인되는 등 무전기 보급실태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표2] 휴대용 무전기 보급현황

구분	계	본부	중부	남부	동부	온산
인원	945	112	273	235	171	154
수량	914	78	269	222	174	171
보급율	96.7%	69.6%	98.5%	94%	101%	111%

※ 울산광역시(○○본부) 제출자료 재구성

2. 공기호흡기 등 고압용기 검사·관리소홀

고압용기에 대해서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따라 관리·운용하여야 하며,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7조(용기등의 검사) 및 「시행규칙」 제39조(용기등의 재검사) 규정에 따라 고압용기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울산○○·○○·○○·○○·○○○·○○○에서는 위 <표 1>과 같이 보유하고 있는 고압용기 총 2,398개(공기호흡기 용기 2,056개, 잠수용기 162개, 산소용기 140개) 중 용기 안전검사 검사기한¹⁾을 초과하여 검사를 실시한 용기가 356개였으며, 최초 안전검사 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이 초과하였으나 감사기간 전(2018.3.4.)까지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용기가 52개, 안전검사 후 다음 안전검사까지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²⁾가없음에도 안전검사를 실시한 용기가 248개로 [표3]과 같이 확인되는 등 고압용기에 대한 검사·관리체계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
[표3] 고압용기 안전검사 실시 부적정 현황

1) 용기 재검사기간 :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중 500L 미만의 용기(공기호흡기용, 잠수용, 의료용 산소용기)는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,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함
 2) 고압용기의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, 심한 부식 등이 확인된 경우 등 용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구분	공기호흡기용 복합용기(2,056개)			잠수용 용기(162개)			의료용 산소용기(140개)		
	기한초과 실시	미실시	기간 도래 전 검사	기한초과 실시	미실시	기간 도래 전 검사	기한초과 실시	미실시	기간 도래 전 검사
합계	229	3	209	82	46	7	45	3	32
○○	122		24	25	25		13		11
○○	31	1	28		19	7	2		5
○○	6		108	46			15		15
○○	65		47	11			11	3	1
○○○		2							
○○○	5		2		2		4		

※ 울산광역시(○○본부)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

[개선] 보유기준 별 부족한 소방장비는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고, 공기호흡기 용기 등 고압용기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